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

2019. 12. 23.



사 회 건 설 위 원 회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사회건설위원회]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2019년 12월 23일

제안자: 사회건설위원장

## 1. 감사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등포구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사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성을 향상시켜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 감시를 제고하고 통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2. 감사기간

-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 2019. 11. 27.(수) ~ 12. 4.(수)

## 3.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 감사대상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복지국, 생활환경국, 도시국, 안전교통국
- 감사대상 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무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회건설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사항 포함

#### 4. 감사반 편성

- 감사총괄 : 사회건설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가나다순)	사무보조자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위원</li> <li>• 구의회사무국 직원</li> <li>• 속기사</li> </ul>

####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시		감사장소	감사내용	비고
1일차		영등포구청 제2감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보고 및 청취</li> <li>- 서류확인</li> <li>- 개별감사</li> <li>- 현장확인</li> </ul>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오전		- 수감사항 정리	
	오후	- 공개질의 및 답변 - 강평		

※ 토요일 ~ 일요일 : 지역의정활동 및 2020년도 예산안 검토

#### 6. 감사방법

- 해당 감사반의 각 국별 실시
- 현황보고 및 청취
- 보충자료 제출 요구
- 서류감사 및 현지 확인
- 개별감사 및 공개질의, 답변
-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 7. 시정 및 지적사항: [붙임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참조

붙임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부. 끝.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사회건설위원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12. 4. (수)	박미영	<p>[다드림 문화복합센터의 교육 과정과 운영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드림 문화복합센터는 중도 입국 외국인, 다문화 가족 및 내국인을 대상으로 조기 적응 교육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 170명을 대상으로 교육, 문화, 상담, 친화 등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li> <li>○특히,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한국어, 중국어, 수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수학 실력 향상에 교과 과정이 치우치고 있어, 다문화 가족 및 관련 내국인의 조기적응의 본래의 취지가 변질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국인의 다문화 외국어 적응에도 기여하고 내외국인의 청소년이 함께 이해와 우정을 도모하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역사와 지리, 아동심리상담, 기초인문학 교육과정을 추가하여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바람.</li> </ul>
2	12. 4. (수)	박미영	<p>[해군복지단의 수송부 건물 철거 및 공원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삼화아파트 인근 해군복지단의 수송부 건물(4층) 및 테니스장은 현재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 행정력을 이용, 강제철거를 권고하고 용도에 부합되도록 병무청 공원화 연구용역에 포함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li> </ul>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	12. 4. (수)	박미영	<p>[신길뉴타운 개발에 따라 2023년까지 상주인구 급증 예상에 따른 교통대책 필요]</p> <p>○신길뉴타운 개발에 따라 상주인구 및 교통량 급증으로 신풍사거리, 사러가시장, 대신오거리 지역은 교통 정체를 빚고 있으며, 특히 출퇴근 시간에 병목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교통 현황 조사와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통 인프라에 대한 대응방안이 요구됨.</p>	<p>○여의도 진입 주요 통로별, 교통 혼잡도를 개선하고, 출퇴근 시 교통 정체지역과 병목현상 지역에 대한 교통 현황 및 흐름도, 신호체계, 시간별 혼잡도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교통 개선 방안이 필요함.</p>
4	12. 4. (수)	박미영	<p>[신길뉴타운 생활 인프라 구축]</p> <p>○신길뉴타운 추진에 따라 2022년까지 1만 가구가 증가하며, 신림경전철과 신안산선의 신설로 급격한 인구 유입과 도시기능의 재편을 눈앞에 두고 있음. 따라서 2030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재검토를 통해 뉴타운 규모에 걸맞은 생활 인프라 구축을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음.</p>	<p>○병무청역 시설공단 재건축 및 메낙골공원 확대, 해군호텔 터널 개선 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p>
5	12. 4. (수)	박미영	<p>[여의도 가로청소의 획기적 개선]</p> <p>○여의도는 3대 도심이며, 정치·경제·언론의 중심으로 특별한 위상을 차지하는 데도 불구하고, 가로청소 분야에서</p>	<p>○중심업무지구(CBO)에 대한 청소인력 기준을 제고하여 가로청소 인력의 보강 및 청소대행의 구조적 개선이 요구됨.</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는 10년 넘게 시범사업형태의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음.</p> <p>○용역 구간은 30.3km로 1인당 1.6km의 청소면을 담당하고 있어 인력 기준에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중심업무지역의 건축 밀집도와 유동인구 규모(일 50만 명 추정), 각종 시위 및 집회, 한강 주말 방문객 등을 고려해 본다면 가로 청소의 인력 기준의 상향이 필요하며 청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이 절실히 요청됨.</p>	
6	12. 4. (수)	박미영	<p><b>[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관련]</b></p> <p>○영등포 전역에 2개의 업체가 1976년부터 현재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 연장을 통해 40년 넘게 정화조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맡고 있음.</p> <p>○특히, 1976년 당시 서울시에 서 허가 업체를 선정하여 각 지자체로 배분하여, 지금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3년씩 연장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종의 특혜로 볼 수 있음.</p>	<p>○장기간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지역 독점적인 운영방식을 제고하고, 경쟁 입찰제를 도입하여 정화조 청소의 서비스 질 개선과 합리적 행정 변화를 요구함.</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7	11.27. (수)	이규선	<p><b>[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 인력 부족에 깊이 공감하며 방과 후 이용 아동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추가 인력 투입이 절실하다고 판단됨.</li> <li>○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아동 돌봄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li> <li>○ 키움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대한 위기의식이 생기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아동센터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관계부서에서는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할 것.</li> <li>○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선정을 위해 다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li> <li>○ 서울시 뉴딜 일자리 사업 연계 등 아동돌봄교사의 지역아동센터 추가 배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li> <li>○ 인근 지역아동센터장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상생과 협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li> <li>○ 관계부서에서 주기적인 운영 실태 지도 점검을 통해 운영의 적정성 제고 및 돌봄 환경 개선에 노력할 것.</li> </ul>
8	11.28. (목)	이규선	<p><b>[노숙인 시설 관리 관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숙인 시설의 기부금 및 지원 물품, 배부처·사용처 등에 대한 세부내역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li> <li>○ 노숙인 시설 설립 및 노숙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숙인 시설 기부금 및 지원 물품의 배부처·사용처 상세내역을 관계부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li> <li>○ 영등포 광야교회 기부물품 배부처 등 상세내역을 제출할 것.</li> </ul>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대책의 가장 큰 수혜자인 영등포 롯데백화점의 공공기여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운 날씨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숙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 거리상담반 및 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공감함.</li> <li>○ 거리상담반 및 현장 근무자들의 처우와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li> <li>○ 노숙인 희망지원센터 앞의 경인로 102길 일대 하수구 악취가 매우 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부서에서는 거리상담원들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처우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최근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li> <li>○ 치수과와 연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노숙인 희망지원센터 인근의 하수구 악취 저감 장치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li> </ul>
9	11.29. (금)	이규선	<p><b>[에너지사용량 저감 대책 관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폭염·한파 등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li> <li>○ 특히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에너지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li> <li>○ 자동차부문은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현재 다양한 지원 및 규제정책으로 배출량 저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부서에서는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제한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건물 부분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저감 노력도 병행하기 바람.</li> <li>○ 현장점검 시 난방온도관리 지속적 시행을 유도하면서 관련 지원책 홍보도 병행하기 바람.</li> <li>○ 관계부서에서는 적정 난방온도 유지방법 및 우수사례를 적극</li> </ul>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물 부분에 대한 노력은 부족하다고 판단됨.	적으로 홍보할 것.
10	11.29. (금)	이규선	<p>[영중초등학교 맞은편 쪽 인근 가로수 제거 등 보도환경 정비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194 (영등포동6가 19) 재광상회에서 인도 상 불법가설 철재 선반을 설치하여 상습적으로 상품을 적치 중임.</li> <li>○이에 따른 인도 폭 침해가 상당하여 구민의 보행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li> <li>○좁은 보도에 가로수까지 식재되어 있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부서에서는 가로경관과 연계하여, 재광상회 일대의 적극적인 불법적치물 단속 및 계도를 통하여 구민의 보행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쾌적한 인도 조성 및 확보에 주력하기 바람.</li> <li>○관계부서에서는 추후 기존 가로수 제거 및 가로수 수종갱신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li> </ul>
11	12. 2. (월)	이규선	<p>[영등포시장 일대 등 관내 가로 환경 정비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법광고물 흔적지우기 사업 참여 어르신의 급여를 최소 타구 수준으로 적정 유지 및 책정해야 함.</li> <li>○영등포시장 일대 가로 및 보도 환경 정비를 위해 고생한 관계 직원 및 현장 단속원들의 노고에 깊이 공감함.</li> <li>○상가 불법적치물의 단속·계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법광고물 흔적지우기 사업 참여자 자격 조건을 최소 영등포구 1년 이상 거주자로 할 것.</li> <li>○차후 가로 및 보도환경 개선 사업 추진 시 관계부서 간 협의하여 기존 보도를 그대로 활용,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li> <li>○가로정비 현장 단속원의 노고에는 깊이 공감하나, 구민을 직접 대면·접촉하는 만큼 단</li> </ul>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도 중요하지만, 인근 지역 상인들의 생계 문제와 연관이 있는 만큼 융통성·탄력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등포역 고가차로가 철거되면 영등포시장 쪽 도로통행량이 증가하여, 영등포시장 경기 활성화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li> </ul>	<p>정한 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선글라스 착용 금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문화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보도 위 통행방해 상습 불법주차 차량 관리 철저</li> <li>○지속적으로 통행불편 등의 민원이 제기되는 만큼 청과물시장 인근의 가로 및 보도환경 정비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 바람.</li> </ul>
12	12. 2. (월)	이규선	<p><b>[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유지보수 관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 관계서류 검토, 공사 감독 등 시설 보수 업무가 전문적인 건축 지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은 행정직 혹은 복지직으로 관련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li> <li>○보조금 교부 시 관계부서 승인 없이 어린이집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하거나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우려됨.</li> <li>○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으로 시설관리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부서에서는 총무과와 연계하여 전문성을 지닌 건축직을 부서에 배치하거나 공사 업무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li> <li>○보조금 교부 시 관계부서에서는 어린이집 원장 및 관계자 사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보조금을 엄중히 관리하고 사후 정산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할 것.</li> <li>○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늘어나는 시설관리 업무에 대응하고 심층·중점적으로 관리하기 바람.</li> </ul>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3	12. 2. (월)	이규선	<p>[건설기계 주기장 관련 현황 및 문제점 지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대부분의 건설기계 주기장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으나, 서울시 내 현장에 건설기계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li> <li>○ 특히 관내 소규모 공사현장의 경우 협소한 골목 안 등 해당 공사장 인근에 주기하여 통행 불편과 같은 거주 구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li> <li>○ 작업 후 건설기계는 반드시 주기장에 복귀해야 하며, 주택가, 도로가 등에 불법주기 한 경우 안전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부서에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기계 불법주기 현장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바람.</li> <li>○ 교통행정과 자체 점검에 그치지 않고 주차문화과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기 바람.</li> <li>○ 특히 소규모 공사현장의 경우 협소한 골목길 안에 불법주기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li> </ul>
14	12. 2. (월)	이규선	<p>[공공건축물 하자발생 예방관리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건축물의 경우 적정 공사기간 미확보에 따라 품질확보가 어렵고 설계품질 검증 미비로 설계도서 간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li> <li>○ 또한 잦은 설계변경과 부서별 분리 발주에 따라 연속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영세 시공업체가 선정되는 경우 하자 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부서에서는 공공건축물 사업 단계 시 반드시 국토교통부 훈령을 참고하여 적정 공사기간 확보에 노력할 것.</li> <li>○ 설계 시 품질관리 전문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할 것.</li> <li>○ 설계자 시공 참여 확대 실시와 발주 시 관계부서 간 통합 발주를 사전에 검토할 것.</li> </ul>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수에 따른 의식 부족으로 하자 처리 지연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부서에서는 공사 과정에서 구민감사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공사관계자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하자발생에 따른 신속한 하자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li> <li>○공공건축물은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체계적인 사후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부실시공 및 하자발생 시 책임소재를 철저히 확인하고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할 것.</li> </ul>
15	12. 3. (화)	이규선	<p><b>[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해제 촉구 관련 (구) 역사문화미관지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산동과 양평동 일대 5km구간이 1984년 서울시 고시 194호에 따라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5층 높이의 건물허가만 승인되어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고 장기적으로 지역 개발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li> <li>○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현재까지 오랜 기간 감수하라고만 강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싶으며, 해당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 어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 구에는 현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합당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 등의 건축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지정 결정에 따라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약됨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막심하므로, 향후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현 실태와 해제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해제 및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람.</li> </ul>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함.	
16	12. 3. (화)	이규선	<p><b>[위반건축물 정비 및 관리 관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가 눈에 띄는 업무가 아님에도 현장에서 고생하는 관계 부서 및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공감함.</li> <li>○ 관내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해 소유자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소유자를 직접 대면하여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됨.</li> <li>○ 최근 고층 위반건축물의 드론을 통한 단속도 논의되고 있지만 드론 비행제한 지역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가 차양막의 경우 단속·계도도 중요하지만, 지역 상인들의 생계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만큼 단속·계도 시 적절한 융통성·탄력성을 발휘하기 바람.</li> <li>○ 위반건축물 정비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li> </ul>
17	12. 2. (월)	권영식	<p><b>[환경미화원의 사고관련 안전대책 강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구 환경미화원이 재활용품수거 상차 중에 디담판에서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하여 치료해 주었음에도 근로능력상실소송을 제기하여, 민법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우리구가 패소하여 34,401,423원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함.</li> <li>○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장치와 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미화원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과 재활용수집차량의 안전장치를 구비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함.</li> <li>○ 차량 이동 시 승차공간에 승차하여야 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함.</li> <li>○ 이러한 사고는 부주의에 의해 구민의 세금이 낭비된 사례이므로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li> </ul>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했으며, 사고자의 노동연한을 65세까지로 산정하여 10%의 노동 상실로 보상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고는 공공기관의 신뢰성 문제를 야기하며 안전의식 부재 때문에 발생했음.</p>	<p>기 바람.</p>
18	12. 2. (월)	권영식	<p><b>[무더위 그늘막 관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더위 그늘막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구민의 호응이 좋은 사업임.</li> <li>○ 그늘막 설치물은 우산의 원리를 이용하여 사용 시엔 펴고 미사용 시엔 접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우리 구는 여름철이 지나고 나면 철거를 하고 다음해 여름철에 설치를 하여 예산을 14,600천원 지출함.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아니할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래의 기능대로 설치된 곳에 접어서 보관하면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절약한 철거·재설치 비용으로는 무더위 그늘막 8개를 신규 설치할 수 있음.</li> <li>○ 그늘막은 인공시설로 수명의 한계와 기능의 한계가 있으므로 그늘막을 대신하여 그늘목을 식재하여 그늘도 만들고, 녹지 효과와 공기질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예상되니 개선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li> </ul>
19	12. 2. (월)	권영식	<p><b>[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관리 문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과에서 세척·소독 관리하는 용기는 1,498개로 월 4회 세척 소독을 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주 2회를 세척 소독을 하고 있으므로, 관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음식점 자체에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음식점 쓰레기 수거용기 수준으로 음식점 수거용기도 관리해야 하며,</li> <li>○ 음식점 쓰레기 수거용기가 주로 구민이 왕래하는 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거리환경의 저해와 구민</li> </ul>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관리하는 수거용기는 청결 문제가 심각하고 그 숫자가 4,200여개 임에도 음식물 쓰레기통 관리규정도 없이 음식점 자체에서 관리는 실정임.</p> <p>○음식물 쓰레기는 냄새도 문제지만, 각종 유해균이 발생될 수 있어 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p>	<p>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청결관리를 해야 하며, 따라서 모든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은 동일한 방법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주기 바람.</p>
20	12. 2. (월)	권영식	<p><b>[재개발 지역의 건축물 철거 문제]</b></p> <p>○소형건축물의 규정을 벗어난 철거는 먼지와 소음을 유발하여 민원을 야기하고 반파의 건축물을 존치하여 미관상 좋지 않으며, 붕괴나 접근에 의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p> <p>○수백 채의 건축물을 철거했는데도 석면 등 특정폐기물의 신고가 2건밖에 없다는 것은 관리에 문제가 많음을 나타냄.</p>	<p>○철거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피해 발생이 없게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함.</p> <p>○석면 등 인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의 관리 소홀로 인해 구민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하며, 철거 후 나대지 관리도 철저히 하여 시멘트 먼지 발생을 없애고 쓰레기 등 환경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과 시정조치를 해주기 바람.</p>
21	12. 2. (월)	권영식	<p><b>[의류 수거함 설치의 문제와 구예산 편성에 대하여]</b></p> <p>○의류 수거함을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을 방지하였다가 설치 숫자가 많고, 장소가 부적절하다는 핑계와 수거함의 모양과 색상이 부적합하며, 견고</p>	<p>○의류 수거함 숫자나 설치장소에 문제가 있으면, 법과 규정에 따라서 관리해야 함.</p> <p>○계약 시 수거함의 숫자와 설치장소를 명시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설치장소를 임</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성이 떨어져서 교체를 해야 한다면서 구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p> <p>○의류 수거함 사업을 한다는 단체가 자비로 설치하고 있는데, 138,000천원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관련 단체나 업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의혹의 여지가 있음.</p>	<p>의로 옮기지 못하게 하여야 함.</p> <p>○자원 재활용은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며, 쓰레기양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기에 의류·신발 등 생활용품 수거방법과 재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기 바람.</p>
22	12. 2. (월)	권영식	<p><b>[공개공지 공사의 예산 집행 문제(영중로)]</b></p> <p>○공개공지는 관련법에 의해서 설치되고, 사유지이지만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공간으로서 건축 행위 시에는 행정대집행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구청에서는 72,630천원 예산으로 공사를 했으며 7:3의 비율로 구와 건축주가 각각 부담을 하는데, 사유지를 구민의 세금으로 정비를 해주는 행정은 해서는 안 됨.</p>	<p>○구민의 세금은 적재적소에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특히 사적인 곳에 지출 되어선 안 됨.</p> <p>○이러한 잘 못된 사업은 없어져야 하며,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음.</p>
23	12. 3. (화)	권영식	<p><b>[공공건축물 장애인편의시설 미비 문제]</b></p> <p>○공공건축물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이므로, 구민을 위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묻고 싶</p>	<p>○구청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건축물에 법적 시설을 갖추게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한 관리를 통해 구민에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돌려줘야 함.</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으며, 모든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민기관이라면 어떤 이유라도 설치를 미룰 수 없는데, 관리기관의 느슨한 관리와 해당 기관의 무책임한 책무가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떨어지게 하고 있음.</p>	
24	12. 3. (화)	권영식	<p><b>[주정차 단속용 CCTV 위치 문제]</b></p> <p>○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무단 주정차로 인한 사고위험과 교통 흐름의 장애를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최적의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인데, 이는 차량 운전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CCTV 옆에 주정차 금지와 단속문구가 쓰여 있지만 운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도로시설물 뒤에 위치하여 암행단속을 위한 설치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음.</p>	<p>○단속용 CCTV는 주정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운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위치로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옮겨 설치해야 함.</p> <p>○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문구를 누구나 인지할 수 있게 하여 암행단속을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람.</p>
25	12. 3. (화)	권영식	<p><b>[가로수 수종 변경 및 위험성 있는 나무의 제거 요청]</b></p> <p>○은행나무 열매의 냄새로 인한 구민들의 민원이 심 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수령이 많은 버즘나무는 나무의 속이 비어 강</p>	<p>○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은행나무의 수종을 바꾸어야 하며, 고령의 버즘나무와 보도의 보행을 방해하는 나무는 정비하여 위험을 제거함으로</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한 태풍에 넘어질 우려가 있으며, 또한 가로수의 둘레 크기가 3m가 넘는 나무가 있어 보도를 좁게 하는 곳이 있음.	써 쾌적한 거리환경과 안전한 도로를 유지기 바람.
26	12. 4. (수)	권영식	<p><b>[불법광고물 제거와 과태료 징수를 저조 문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분별한 광고물 부착과 전단지 살포, 현수막 설치는 거리환경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함. 이러한 문제해소를 위해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연 2억의 예산을 지출하면서 거리환경 유지를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li> <li>○ 불법 광고물 부착과 살포예방을 위해 위법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액 징수해야 함에도 징수율이 2015년 39.5%, 2016년 53.7%, 2017년 25.9%로 부과만하고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가 거듭되어도 불법광고물 부착 배포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은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함에도 징수를 제대로 못하는 행정과 부과된 지 5년이 경과된 과태료는 시효결손처리 되는데 있음.</li> <li>○ 단속 부과를 했으면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야 하는데, 징수를 하지 못하니 불법광고 행위도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100% 징수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기 바람.</li> </ul>
27	12. 4. (수)	권영식	<p><b>[공동주택, 경비실·휴게실 에어컨 설치비 지원 문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적인 공간인 경비실·휴게실 에어컨 설치비용에 구민의 월세 28,000천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세금낭비이며 선심성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금은 목적에 맞게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 되어야 함.</li> <li>○ 공동주택 경비실·휴게실 같은 사적인 공간의 에어컨 설치하는 사용자가 직접설치 사용하여야 함에도 「공동주택관리법」</li> </ul>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사유에 소외된 근로계층의 열악한 환경개선과 상생의 문화조성으로 인권존중 등 상생·배려의 공동체문화 확산이라고 하는데, 사적인 공간 개선에 세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건전성 예산 지출에 맞지 않고, 예산 지출의 우선순위에도 적합하지 않음.</li> </ul>	<p>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지역구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도 아니므로 예산의 적절한 지출이 될 수 없으며, 무절제한 예산 지출은 선심성 지출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 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하기 바람.</p>
28	12. 4. (수)	권영식	<p><b>[국회의사당 앞 불법 가설물·현수막 설치 문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의사당 앞 도로의 불법가설물, 무단현수막 설치는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음.</li> <li>○ 이러한 무질서하고 위법적이고 위험한 불법 가설물 설치에도 구청은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음.</li> <li>○ 일반도로에 생계형 좌판대 노점행위도 온갖 협박과 법의 잣대를 대어 강제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국회의사당 앞 불법 가설물이나 불법 현수막 설치에는 한번 도 단속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행정이며, 직무유기성 행정이라고 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의 잣대는 공평해야 하고, 위법을 알고도 처리를 않는 것은 업무태만이고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음.</li> <li>○ 법을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개도·지도하거나 강력 대응하여 통행의 불편함 해소와 교통사고 위험을 제거하여 쾌적한 거리환경과 안전한 도로를 유지하기 바람.</li> </ul>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9	12. 4. (수)	권영식	<p><b>[어린이집 운영의 문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미래의 자산이며 더욱이 인구 감소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이기도 함.</li> <li>○어린이는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고, 모든 어른은 어린이를 보호하고 육성할 의무가 있음.</li> <li>○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은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영 주체는 책무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나, 2018년, 2019년 정기 수시 지도점검을 보면, 2018년보다 2019년이 지적사항 및 행정처분 적발 횟수가 늘어났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적사항이나 행정처분이 줄어들지 않는 원인을 분석·확인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바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아이들과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아가 출산장려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임.</li> <li>○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길 바람.</li> </ul>
30	11.29. (금)	박정자	<p><b>[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체납징수 건수 및 밤샘주차 단속 실적 저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3년 치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의 효율을 분석해 보면 부과·징수율이 낮아 단속의 실효성이 없음. 또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요원이 4명이나 있는데도 단속 실적은 저조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게는 독촉을 통해 과태료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징수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li> <li>○소음·매연 및 범죄 방지를 위해 단속 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하는 화</li> </ul>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물차, 전세버스, 마을버스, 법인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해 주길 바람.</p>
31	11.29. (금)	박정자	<p><b>[치밀한 사업계획으로 집행잔액 최소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지원과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금년 10월 말 현재 예산 집행률이 57.5%로서 집행 실적이 저조하며,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설치사업’의 민간 위탁사업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89,000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에도 2020년도 예산안에 2019년 명시이월 사업 중에 포함되어 있음.</li> <li>○이월사유가 ‘어린이집 신축공사(2020년 3월 준공) 및 공동주택 의무설치 어린이집 2020년 준공에 따라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당초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부실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추진 가능성 및 소요예산 등 제반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하여 집행 잔액 및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li> </ul>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권고되었음에도 해당 사업에 대한 동일한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음.</li> </ul>	
32	11.29. (금)	박정자	<p><b>[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추가경정예산 요구 지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과에서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빈집 정비계획 수립용역’사업에 따른 구비 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今番) 제2차 정례회 건축과 업무보고 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빈집 정비계획 수립’ 사업을 보고하면서 2019년 12월 중 용역 발주하고 2020년 1월에 용역 계약 및 착수하며 2020년 6월에 용역 준공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일정을 보고하였음.</li> <li>○또한 내년도 소요예산은 총 5천만 원으로 그 중 시비는 4천5백만 원, 구비는 5백만 원으로 보고하였는데, 2020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에는 ‘빈집 정비계획 수립’예산이 미편성되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수립하여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도록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임.</li> </ul>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따라서 사실상 금년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렵거나 내년도 집행 예정인 소요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미리 앞당겨 편성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함.</li> </ul>	
33	11.29. (금)	박정자	<p><b>[내실 있는 사업계획으로 이월액 최소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로과에서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시설비로구비 2,594,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금번 제2차 정례회 도로과 업무보고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2019년도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금년 10월 말 현재 사업시행인가 및 보상계획 수립 중이며, 2020년 2월부터 9월까지 토지보상을 시행하고,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음.</li> <li>○또한,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금년도 추경으로 편성된 동 사업 예산 전액이 실시계획인가 및 감정평가 등 선행절차 이행기간이 필요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내실 있는 계획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을 도모하고 이월액을 최소화 하기 바람.</li> </ul>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사업의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li> </ul>	
34	12. 2. (월)	박정자	<p><b>[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청결 유지·관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점 배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내·외부에 묻은 음식물 찌꺼기로 인한 악취 및 해충 등의 피해로 불쾌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li> <li>○ 주택가 음식물쓰레기 거점수거용기에 대해서는 구 소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이 주 1회 세척을 실시하고 있으나, 음식점 수거용기 관리는 업주 책임으로서 제대로 세척이 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구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li> <li>○ 소관 부서에서는 사실상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공문을 통한 제도 외에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의 청결 유지 및 관리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요구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점 업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제도 외에도 구매가 용이한 수거용기 세척용품 및 손쉬운 세척방법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배부하고</li> <li>○ 중장기적으로는 「영등포구 내 집·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의 ‘청결유지 책임’ 규정을 참고하여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수거용기의 청결유지 책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거나,</li> <li>○ 수거용기 관리 주체(업주)별 개별 부담에 의해 대행업체가 주기적으로 소독·세척하는 방식의 가능 여부 검토 및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함.</li> </ul>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5	12. 3. (화)	박정자	<p>[다목적 CCTV 신규 설치 사업 지연으로 구민의 재난 및 안전 관리에 심대한 문제점 야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목적 CCTV가 적기에 설치되어야 함에도 금년도 다목적 CCTV 신규 설치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8.1%에 불과하며, 총 예산액 3,708,000천원 중 1,100,000천원은 사고이월 예정이고, 800,000천원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함.</li> <li>○조달청 내부 사정에 의해 사업 추진이 지체되었다고는 하나 소관부서에서 연초부터 사업추진을 서둘렀다면 구민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재난안전도시 건설에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영등포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다목적 CCTV 신규 설치 사업 추진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li> <li>○사업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발생 시 구민 및 의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신속하게 소상히 설명하고 안내함으로써 사업 지연에 따른 궁금증을 해소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소통능력과 노력을 강화해 주기 바람.</li> </ul>
36	12. 3. (화)	박정자	<p>[자전거보관대 주변 청결유지 및 정리정돈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민의 자전거 이용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현재 관내 자전거 보관대 시설이 156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나, 자전거 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6개 자전거 보관대에 대한 지정 관리자 제도를 강화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변 청소 및 자전거 정리정돈 상태를 파악, 조치함으로써 자전거 보관대 주</li> </ul>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관대 주변의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불결하며 보관 중인 자전거 정리정돈 상태도 무질서함으로 인하여 구민들의 불평이 계속되고 자전거 이용 구민의 불편이 심화 되고 있음.</p>	<p>변 환경개선과 이용 구민의 편의 제공에 기여하기 바람.</p>
37	12. 3. (화)	오현숙	<p><b>[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관련]</b></p> <p>○ 각 단체 후원금과 구비 지원금으로 매년 겨울철 김장김치를 준비하여 지역사회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김장김치를 나누는 과정에서 일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p>	<p>○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추운 겨울철 최고의 반찬이라 할 수 있는 김장김치를 나누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앞으로는 동별로 예산을 책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p> <p>○ 한 겨울 관내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김장김치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역내 소외되고 어려우신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람.</p>
38	12. 3. (화)	오현숙	<p><b>[영등포 거리가게 안전 문제 관련]</b></p> <p>○ 영등포 중심지이자 유동인구가 많은 영등포에 LPG 가스통을 사용하는 거리가게가 있어, 우리 구민은 물론 통행하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p>	<p>○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영등포 거리가게 중 LPG 가스통을 사용하고 있는 가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상존하는 위험을 하루 빨리 개선해 주기 바람.</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9	12. 3. (화)	오현숙	<p><b>[구청 행사 소음 문제]</b></p> <p>○ 각종 구청 행사 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음.</p>	<p>○ 구청 행사 시 요일, 시간, 장소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행사 인근지역 주민들이 소음 발생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p>
40	12. 3. (화)	오현숙	<p><b>[연중 조기 사업 시행으로 주민 신뢰도 제고]</b></p> <p>○ 2019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각종 사업은 가급적 상반기에 착수하여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사업 추진으로 인한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연말에 이르러 시행하고 있는 사업 현장들을 보면서 주민들은 예산이 남아돌아 부랴부랴 연도 내 예산 집행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 시책에도 어긋남.</p>	<p>○ 향후 전 부서에서는 당해 연도 본예산에 의한 사업은 연중 조기에 착수하여 사업 완료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각종 공사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며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은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현장 위주의 상시 모니터링을 이행하기 바람.</p>
41	12. 4. (수)	오현숙	<p><b>[보도(歩道) 관리 문제점]</b></p> <p>○ 우리 구는 구도심지로서 정비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보도가 대부분으로 도로과 자료에 따르면 22개 시도상 보도 침하 등에 따른 평탄성이 불량한 곳이 3,500여 개소이</p>	<p>○ 주민들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서 최우선으로 노후 보도의 조속한 정비와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함.</p> <p>○ 우리 구 보도면적은 시도와 구도를 합쳐서 대략 600,000</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며, 부분적인 보수에 약 10억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도로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배상접수 건은 최근 3년간 평균 17건이며, 피해배상금으로 연평균 6천3백만 원이 지급되고 있음.</p> <p>○한 달에 한두 명이 도로 파손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구민들이 입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규모 또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음.</p>	<p>m<sup>2</sup>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를 재정비하고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되고 있는 실정으로, 구청에서는 서울시 및 우리 구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보도정비 예산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함으로써, 우리 구가 보행친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함.</p>
42	12. 2. (월)	유승용	<p><b>[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 관심 및 활성화 저조]</b></p> <p>○단독 및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보조 및 용자),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60조(주민공동체 운영회 등의 지원)에 따라 서울시 예산(시비)을 지원받아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림1동 총사업비 13.6억 원, 대림2동 총사업비 29.9억 원, 도림동 총사업비 8.5억 원 총사업비 52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추가 2개의 대상지역을 물색하고 있으</p>	<p>○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구민참여 의지가 높고, 주민 관심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재검토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주차장 확보 및 골목 전신주, 통신주 이전 등 건물들을 개선하고 골목 도로를 확장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이 없고, 예산 낭비만 되는 실효성 없는 사업이라는 구민들의 비난 민원이 많으며, 실제 조사결과 구민관심 및 참여 부족으로 공동체 활성화가 저조한 편임.</p>	
43	12. 3. (화)	유승용	<p><b>[공원 녹지 유지 관련]</b></p> <p>○최근 신길동뉴타운 아파트가 속속들이 입주 완료하였거나 곧 입주 예정됨에 따라 그 인근 신길동이나 대림동 지역에 공원 및 녹지공간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박탈감이 든다는 민원이 많음.</p>	<p>○공원 및 녹지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새롭게 조성된 재정비구역에 비해 기존 공원은 시설이 낡고 오래되어 상대적으로 비교가 안 되니 기존 공원 및 녹지 품질 관리에도 특별히 신경 써서 영등포구가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라며,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자체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어른과 아이들 모두 관심 있는 쿨링포그를 대림어린이공원에 설치할 것을 검토 바라며, 미세먼지 대책과 여름철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목 등의 추가 식재를 요청함.</p>
44	12. 3. (화)	유승용	<p><b>[2019년 공가 현황 관련]</b></p> <p>○우리 구 전체 공가(빈집) 현황은 163개소(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시 관리 112개소, 구 관리 51개소)인데, 이 공가는 범죄사고와 약취 및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고 청소가</p>	<p>○구민의 사유재산이나, 건물 전기·가스 안전실태 점검 및 청소와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하고, 경찰서와 연계해 방법 순찰자와 합동으로 범죄예방 순찰을 강화하기 바라며, 공가 정비계</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안 되는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여 구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음.</p>	<p>획을 수립해 장기적인 공가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사용 승인을 받아 리모델링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보호대상자, 독거노인, 집 없는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가능한 매입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함.</p>
45	12. 3. (화)	유승용	<p><b>[클린하우스 무단투기 CCTV 운영 관련]</b></p> <p>○클린하우스 무단투기 관련 CCTV는 전체 105개소(클린하우스 무단투기 CCTV 49개소, 무단투기 예방 스마트 CCTV 44개소, 이동형 CCTV 12개소)로 총 210개소 운영을 행정공무원 1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CCTV의 잦은 고장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경찰서 등의 자료 요청 증가와 클린하우스 내 무단투기 적발 확인 및 청소 관련 일반 업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전담 인력 채용이 필요함.</p>	<p>○CCTV를 전담 관리할 수 있는 기간제 인력 1명을 추가 채용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하면, 기기 고장 및 경찰서 자료 요구 민원과 범죄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가능 할 것임.</p> <p>○또한 클린하우스 전담인력 운영은 무단투기자 사진 계첩 등 무단투기 단속 및 깨끗한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됨.</p>
46	12. 3. (화)	유승용	<p><b>[영중로 간판개선사업 관련]</b></p> <p>○영등포역 앞 ~ 영등포시장사거리(양방향 900m)간 150개소에 3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규 LED 간판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디자인 분야와 철거·제</p>	<p>○구 옥외광고물 조례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에 따라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구성원으로 구의원을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향후에는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구성을 사업구간 내 거주 또는 영</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작·설치·사후관리 분야를 별도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며, 또한 간관개선주민위원회가 사업구간 점포주와 건물주 및 구의원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당연직 공무원인 부서장이 간관개선위원회에서 제외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업 활동을 하는 민간인 3분의 2, 전문가 또는 관계 부서장인 공무원이 3분의1이 포함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구의원을 제외하는 방향을 모색하기 바람.
47	12. 3. (화)	유승용	<b>[불법 광고물 과태료 현황 관련]</b>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을 살펴보면, 2014년~2018년 5년간 6,659건에 5,231,235천원을 부과하여 3,679건에 2,090,597천원을 징수하고, 2,980건 3,140,638천원이 체납됨으로 부과액 기준 60%가 체납액이므로 과태료 징수가 저조하여 구 세수 확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과태료 부과 및 징수액 부과에 따른 체납액이 60%나 됨으로 TF팀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 및 구 세수 확보에 노력하여 불법 광고물 단속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48	12. 3. (화)	유승용	<b>[하수관 및 배수 설비 공사 안내문 관련]</b> ○대림동은 다문화 외국인이 서울에서 제일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 사전안내 표지판을 보면 외국어 및 중국어로 된 안내문이 전혀 없어 외국인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공공하수관 공사 및 개인 배수 설비 공사 시 하수관 공사가 끝난 후 연결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 개인 하수도 역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나, 한 번 공사가 끝나면 포장이 되어 배수 설비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하수관 공사 시 각 구간에 대한 사전안내를 한국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어, 중국어, 영어로 철저히 해주고 건축주가 부재중일 경우에는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됨.
49	12. 4. (수)	유승용	<p><b>[어린이 보호구역 안전망 관련]</b></p> <p>○어린이 보호구역 다목적 CCTV 91개소(224대), 일반 방범용 CCTV 140개소(초등학교 86, 유치원 36, 어린이집 18), 과속정보시스템 31개소(초등학교 23), 어린이보호안전표지 72개소(어린이 보호구역 통합표지 630개 외 8개 유형의 안내표지)가 혼재 설치되어 있어 정보시스템이나 과속측정기, 과속단속 CCTV가 부족하여 설치 안된 구역이 많으므로 연동 설치되도록 정비가 요구됨.</p>	<p>○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다목적 CCTV, 과속단속 CCTV, 과속경보시스템, 과속측정기, 방범용 CCTV, 안내표지 등을 전수 조사하여 여러 시스템들이 연동되도록 CCTV를 정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범죄 발생과 교통사고 예방, 교통질서 유지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p>
50	12. 4. (수)	유승용	<p><b>[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 수립 관련]</b></p> <p>○2030 영등포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정체되어 있는 영등포 도시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임.</p> <p>○왜냐 하면 60·70년대 한강 이남 종갓집이던 남서울 영등포가 주위에 있는 인접 구와 비교해 볼 때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임.</p> <p>○2040 계획으로 5권역으로 나누어진 탁트인 내일을 여는 혁</p>	<p>○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용역을 주어 연구 추진되고 있으나 시간 범위를 보면 2019년에서 2040년까지 20년간의 연구 계획을 통한 재정비촉진사업과 영등포역 경인로 일대 약 521,000㎡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맞물린 2030 서울플랜과 연계하여 서울시 3대 도심으로 위상이 정립되고, 영등포 전철 환승역 중심으로 대방역에서 시흥대로변에 상업지구, 지구단위 및 특별관리지역 등 다양한 도시</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신도시 영등포를 만드는 설계 용역이 수립되어 1차 공청회 를 개최하고 추진 중에 있음.	기능이 실효성 있게 균형발전 이 이루어지고 잠재적으로 지 속가능한 스마트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38만 영등포구민의 염원을 담아서 미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계 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혼연일체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51	11.27. (수)	이용주	<b>[CCTV 단속 구간 번호판 가림 차량 주차단속 미흡]</b>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통 한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해 나무판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 는 불법행위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실정임.	○무인단속 카메라(CCTV)를 통한 단속 시 관제실 대사작 업으로 번호판 가림 차량 사 진을 확보하고, 시간·장소 확 인 후 현장 단속반에 전달하 여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필 요 있으며, 확보된 차량 번 호를 경찰서에 이첩 하는 등 주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위 법행위를 근절하여 안전한 교 통문화 및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람.
52	11.29. (금)	이용주	<b>[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관 리 미흡]</b>  ○2019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 료 체납액이 1,149백만 원으 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도, 부과된 과태료가 제대로 징수 가 되지 않은 등 체납자에 대 한 관리나 조치가 미흡함으로, 독촉을 통해 과태료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이 시급함.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적기 에 부과·징수하기 위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가 필요하고,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에 대 한 압류를 시행하는 등 적극 적인 채권 확보를 실시하여 징수율을 제고하여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길 바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3	11.29. (금)	이용주	<p>[옥상간판 안전점검 후 이행강제금 미부과]</p> <p>○2019년도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으로 부분 부식 조치가 필요한 옥상 간판을 적발하고도 시정 조치 기간 경과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제때 부과하지 않은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함.</p>	<p>○관내 위험간판 전수 조사 및 정비로 주민안전 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적발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에게 시명명령(1차)을 하고 미조치 시 2차 시정명령 해야 할 것이며, 2차 시정명령 기간 1개월 내 미이행 시 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적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바람.</p>
54	11.29. (금)	이용주	<p>[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관리 미흡]</p> <p>○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 과태료를 적기에 부과·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압류가 제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p>	<p>○적기 고지서 발송 및 체납 처분을 실시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수시로 징수과와 협력하여 재산조회를 통해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예금 등에 압류를 실행해 주길 바라며, 부과 초기에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여 단속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p>
55	11.29. (금)	이용주	<p>[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저조]</p> <p>○2019년도 불법광고물 과태료 징수율이 25.4%로 2018년 42.0%보다 매우 저조하여 단속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음.</p>	<p>○무질서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쾌적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단속 부과했음에도, 징수율이 저조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짐.</p> <p>○과태료 분납 및 카드결제 가</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능 사실을 적극 홍보하는 등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 바라며, 고액·상시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 압류를 적극 실시하는 등 특별 관리하기 바람.</p>
56	12. 3. (화)	이용주	<p><b>[2019년 예산 불용액 발생 문제점]</b></p> <p>○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몇몇 사업에서 예산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정임.</p>	<p>○예산 편성 시부터 추진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p> <p>○과다한 불용액은 집행부의 신뢰와 예산 건전성을 낮추고, 그로 인하여 시급한 다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야기함으로 앞으로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p>
57	12. 3. (화)	이용주	<p><b>[일시도로점용 허가 기준 엄격히 적용 필요]</b></p> <p>○일시도로점용 허가를 내고, 허가 지역외의 도로까지 사용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민원 응대 담당 공무원 1명이 월 80여 건의 민원 신고를 받아 현장 확인 및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임.</p>	<p>○민원 처리 담당자를 추가 배치하여 민원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고, 발생한 민원 신고에 대해서는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원상 복구되도록 조치하여 통행안전 위해요소를 정비하는 등 보행환경을 개선해 주기 바람.</p>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8	12. 3. (화)	이용주	<p>[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 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406건 7,647,534천원을 부과하여 1,314건 6,167,528천원을 징수하였으나, 92건 1,480,006천원이 체납되어 체납률이 19.4%로서 높은 편임.</li> <li>○따라서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행강제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자의 소득 순위에 따른 분납을 유도하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조치로 채권을 확보하고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공매를 적극 검토하기 바람.</li> <li>○또한, 체납자의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고, 타 지자체에도 체납자에 대한 인허가 등의 제한을 요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체납 관리방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바람.</li> </ul>
59	12. 2. (월)	최봉희	<p>[기간제 근로자 채용 자격심사 개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저소득층을 우대하여 채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선정하고, 추가 채용하는 데 있어 소득 및 재산에 대한 확인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간제 근로자 채용 선정 시에는 반드시 채용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모든 소득 및 재산에 대해 확인 후 채용하기 바람. 응시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길 당부함.</li> </ul>
60	12. 4. (수)	최봉희	<p>[2019년부터 수의계약을 1개 업체에 5건 이하로 제한한 것에 대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9년 1월 1일부터 1개 업체에 5건을 초과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현재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한 소관 부서에서 수의계약이 10건 뿐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민들께서 지적하신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투명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공정계약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더욱 기울여 주시기 바람.</li> </ul>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데, 30%를 한 업체에 몰아주었고, 그 동안 수의계약을 해오던 업체들은 5개의 수의계약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여러 업체 사업자 명의를 빌려서 업체당 5건씩 계속 일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 업체를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돕고 일정한 이익금을 받아가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나 직원들은 인지 못하고 있음.</p>	
61	12. 4. (수)	최봉희	<p><b>[장기 법률 위반 건축물 조치 요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법 건축물은 적발 이후에 위반 사항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오랜 기간 이행강제금만 부과 받고 계속적으로 위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li> <li>○미온적인 대처에서 벗어나 위반 사항을 원상복귀 시키려는 조치가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내 건축물에 대한 법률 위반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 발굴하여 위법 건축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시정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기 바람.</li> </ul>
62	12. 4. (수)	최봉희	<p><b>[관내 노인정 및 경로당 지원에 대하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정 및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후 시설을 교체하여 만족도를 높이는데 지원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에도 기본적인 편의시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정 및 경로당에 운동기구나 가전제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싱크대나 화장실 같은 기본적인 노후 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서,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정 및 경로당에 찾아가고 싶은 마음일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 및 노후 물품 교체 등에 초점을 맞추어 노력해 주기 바람.</li> </ul>